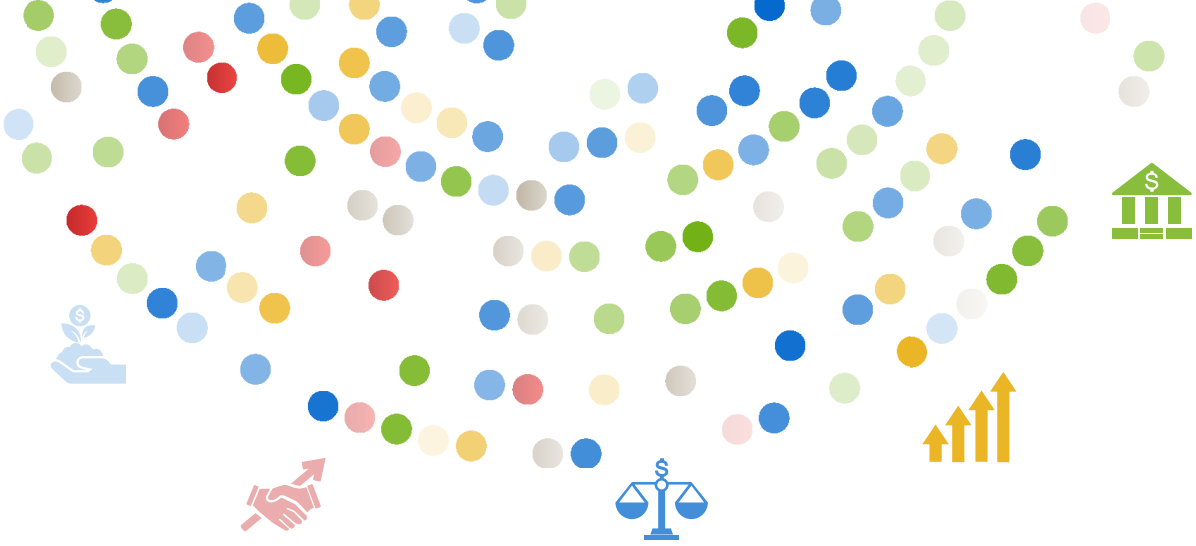


이자비용공제제한 관련 BEPS 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2016.0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CONTENTS

01. 도입 배경 1

02. 주요 권고사항 3

03. 국내 입법동향 4

04. 해외 입법동향 5

1. 아메리카 5
2. 유럽 5
3. 아시아/오세아니아 7
4. 요약 8

05. 요약 및 시사점 9

참고문헌 11

01 도입 배경[1)]

■ **국제거래에서 조세전략상 제3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차입 등의 형태로 발생하는 이자비용 등을 활용하여 소득이전행위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원잠식이 발생함**

- 더구나 이러한 제3자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채조달을 통한 소득이전은 다른 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음

■ **차입자의 부채와 자본에 대한 세법상 다른 대우는 국가 간 차입금융에 대한 조세편향을 발생시키며, 이러한 왜곡은 대여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정책에 따라 더욱 악화될 수 있음**

-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내법상 목적에 따라 부채와 자본에 대한 과세체계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금조달회사 입장에서 부채에 대한 배분은 공제되고 자본투자에 대한 배분은 공제되지 않음
  - 자금조달회사는 부채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비용을 공제받는 반면에 배당이나 기타 자본거래에 따른 지출은 자금조달자의 과세소득계산 시 공제되지 않음
- 대여자는 이자소득은 과세되고 배당은 이중과세조정의 형태로 비과세 또는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나 자금조달회사와 다른 국가에 소재할 경우 소득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예를 들어 대여자의 거주지국이 낮은 세율 또는 조세피난처와 같은 사실상 세금부담이 없는 국가에 소재하면 이자비용 등을 통해 소득이전이 발생하게 됨

■ **국가마다 제3자 또는 특수관계인 이자비용을 활용한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도입하고는 있으나 핵심 쟁점을 다루지 못하고 있으며, 단일 국가만의 규정 도입은 한계를 지닐 수 있음**

- 일부 국가에서는 일반적인 이자제한규정이 국내유입투자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는 국내유입투자와 국외유출투자 모든 상황을 모두 다룰 수 있는 규정들이 시도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국가만의 이자공제를 제한하는 강력한 방법을 도입할 경우 국제시장으로서의 국가 그 자체와 해당 국가의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1) OECD, *Limiting Base Erosion Involving Interest Deductions and Other Financial Payments, Action 4 –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OECD Publishing, Paris., 2015. 요약.

을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국제적인 모범규정을 활용한 일관된 접근방식은 이자를 활용한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임**

- 일관된 접근방식은 국가 간 과세체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왜곡을 제거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이중과세 위험을 줄이면서도 BEPS위험을 제거할 수 있으며, 글로벌그룹 간 형평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02 주요 권고사항[2)]

Action 4 이자공제제한은 이자공제를 통한 세원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으로, 현재 공통접근방법으로 분류되어 강제적인 이행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음

Action 4의 권고사항은 모범접근방법의 적용이며 이는 여러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

- 모범접근방법은 최소한 다국적그룹에는 적용되어야 하며 국내그룹 또는 국내 개별 기업에 적용할지 여부는 선택적임
- 각 국가는 선택적으로 이자공제제한의 적용이 이루어지는 이자비용기준 최소 양적기준(de minimis monetary threshold)을 둘 수 있음
- 각국은 개별 기업에 대해 EBITDA(EBIT도 가능)의 10~30% 내에서 고정비율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 제한적인 경우로 국가의 경제가 극도의 장기자본투자환경에 처해 있는 경우 자산기준도 가능함
- 각국은 선택적으로 기업들이 제3자 순이자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그룹비율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제3자 이자비용 10%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선택적으로 가능하며, 고정비율규정을 초과하는 기업들에 한해 자산기준의 적용도 가능함
- 각국은 선택적으로 기간 간 EBITDA와 이자비용의 불일치를 완화하기 위해 미공제비용 및 잔여한도를 이월하거나 소급하도록 할 수 있음
- 각국은 비율규정을 보완하고 소득이전과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목적규정을 둘 수 있음
- 각국은 금융보험업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어야 함
  - OECD/G20에서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작업을 2016년까지 완료할 예정임

2) OECD, op. cit., 요약.

03 국내 입법동향

우리나라는 이자비용공제제한제도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관련된 입법동향이 존재하지 않음

- 고정비율법 등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로 2016년 연구용역 실시 등으로 입법 여부를 검토하고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힘[3)]

현행 과소자본세제는 Action 4의 별도목적규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고정비율/그룹비율규정과는 차이가 존재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이자공제제한 규정이기는 하나 손익기준을 근간으로 하는 Action 4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함
  - 2014년 과소자본세제 개정 시 차입비율(부채/자본)을 기존 300%[4)]에서 현행 200%로 강화하였으나 이는 Action 4와는 무관함

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BEPS 프로젝트 조치별 대응 방향(II) 기업과세의 일관성 확보」, 2015.11.20., p.17.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12.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04 해외 입법동향

1 아메리카

■ **미국은 실질에 따른 과소자본세제와 손익기준의 이자공제제한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Action 4와 관련한 동향은 확인되지 않음**

- 과소자본세제는 사실과 상황에 따라 과도한 부채 사용 시 자본으로 재분류함
  - 특정 비율 규정은 없으나, 부채비율이 300% 미만이면 과세관청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손익기준 이자공제제한은 특수관계자에 지급되는 이자 등에 적용되며 부채비율이 150%를 초과하면서, 순이자비용이 조정된 과세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이자공제를 제한함[5)]
  - 미공제 이자는 이월되며, 미사용 한도는 3년간 이월됨
- 여러 이자공제제한 제도에 대한 검토보고서 등은 공개하고 있지만[6)], Action 4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동향은 확인되지 않음

2 유럽

■ **EU회원국들은 EU 차원에서 진행중인 조세회피방지패키지 지침에 따라 이자공제제한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으나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2016년 1월에 제안된 이 지침은 2016년 6월 정치적 합의 이후 2016년 7월 12일 유럽연합재정이사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됨[7)]
- 지침은 이자공제제한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각국은 이에 부합

5) IRS, "LB&I International Practice Service: Process Unit– Audit," 2016.1.16.,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6) The White House &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The President's Framework for Business Tax Reform: An update," April 2016.,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7) European Council, Council of European Union(http://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6/07/12-corporate-tax-avoidance/),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한 입법하여야 하지만, 이자공제제한제도는 이의 예외 중 하나임

- 별도목적규정을 가지고 있는 회원국은 OECD가 이를 최소기준으로 분류하거나 2024년 1월 1일 중 가까운 날까지 변경을 유예할 수 있음

영국은 이전가격제도에 따른 과소자본세제를 운용하고 있었으며, Action 4에 따른 이자공제제한 제도에 대해 공개 의견수렴 중에 있음

- 영국은 별도의 과소자본세제를 두지 않고 이전가격제도에 포함하여 공정부채비율제도를 적용해왔음
- 2016년 5월 이자공제제한제도를 위한 두 번째 공개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는 2017년 4월 이후에 도입될 가능성이 존재함[8)]
  - EBITDA의 30%, 그룹비율규정 적용 가능, 2백만파운드의 순이자비용 공제 최소기준, 미공제 이자비용의 무기한 이월 및 미사용 한도 3년간 이월, 자원·금융·투자기구 등에 대한 배제 등 Action 4와 일관된 내용을 담고 있음

노르웨이는 손익기준의 이자공제제한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Action 4에 따른 입법이 진행되고 있음

- 2014년부터 순이자비용이 5백만크로네 이상인 경우 그룹내 관계기업 간 이자비용에 대해 세법상 EBITDA의 25%를 한도로 공제를 제한하고 있음[9)]
  - 미공제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10년간 이월됨
- 2016년 예산 및 수정 예산에서 Action 4를 수용하여 제3자 이자비용까지 확대하는 안 및 한도를 EBIT의 40% 변경하는 것을 제안함[10)]

이외에 독일, 덴마크, 그리스, 핀란드 등의 일부 국가들이 손익기준 이자공제제한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Action 4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며, Action 4와 관련한 동향도 확인되지 않음

- 독일은 순이자비용이 3백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EBITDA의 30%을 한도로 순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하고 있음[11)]

---

8) GOV.UK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tax-deductibility-of-corporate-interest-expense/tax-deductibility-of-corporate-interest-expense-consultation).,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9) E. Furuseth, Norway – Corporate Taxation sec. 1., Country Surveys IBFD.,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10) Ernst & Young, Norwegian Government issues revised Fiscal Budget for 2016 and proposal for implementation of CbC reporting, Global Tax Alert, 13 May 2016, p.2.,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 다만, 연방재정대법원(Bundesfinanzhof)은 2016년 2월 이 규정이 조세 형평성에 반하여 독일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해 줄 것을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에 제청하여 심리 중에 있음[12)]

- 덴마크는 부채/자본비율에 따른 과소자본세제와 더불어 자산기준과 손익기준 순금융비용 공제한도를 규정하고 있음[13)]
  - 자산기준은 그룹 등의 기준으로 자산에서 특정 금융자산을 차감한 금액에 일정비율(2016년 3.4%)을 한도로 순금융비용을 제한하는 것임
  - 손익기준은 이자법인세차감전순이익(EBIT)기준 80%를 초과하는 순금융비용에 대해 공제를 제한함
- 그리스는 2014년부터 순이자비용의 공제한도는 EBITDA의 60%를 적용하여 매년 10%p 감소하여 2017년부터는 EBITDA의 30%가 적용됨
- 핀란드는 고정비율규정으로 EBITDA의 25%를 초과하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순이자비용을 공제제한하고 있으며, 그룹비율규정으로 유럽경제공동체(EEA) 등에 존재하는 연결그룹보다 자본비율이 높으면 공제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14)]

3 아시아/오세아니아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일부 국가들이 손익기준 이자공제제한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Action 4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며, Action 4와 관련한 동향도 확인되지 않음

- 일본은 부채기준인 과소자본세제와 특정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조정과세소득의 50%를 한도로 하는 이자공제제한제도를 모두 가지고 있음
  - 아직 공개적인 동향은 없으나 일본 재무성은 Action 4와 현행 제도 등을 분석하여 비율의 축소, 적용대상 및 별도목적규정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15)]

---

11) A. Perdelwitz, Germany – Corporate Taxation sec. 7., Country Surveys IBFD.,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12) Norton Rose Fulbright(http://www.nortonrosefulbright.com/wissen/publications/137127/german-federal-court-of-finance-questions-constitutionality-of-german-interest-limitation-rule).,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13) Deloitte, Taxation and Investment in Denmark 2015, p.15 & L. Ambagtsheer-Pakarinen, Denmark – Corporate Taxation sec. 7., Country Surveys IBFD.,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14) L. Ambagtsheer-Pakarinen, Finland – Corporate Taxation sec. 1., Country Surveys IBFD.,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15) 財務省, 説明資料〔「BEPSプロジェクト」を踏まえた国際課税の課題〕, 平成28年5月26日(木), p.7.,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자소득을 제외한 기타손익(EBIT과 유사)의 50%를 한도로 순이자 비용을 공제함[16)]

4 요약

표 1 주요국의 Action 4 권고사항 입법동향

국가	진행상황	
	기존규정의 합치여부	동향
미국	일부 존재	-
EU	-	관련 지침을 채택하였으나, OECD/G20의 이행체계분류 변경시점과 2024년 중 빠른 날까지 유예함
영국	일부 존재	EBITDA의 30%, 그룹비율규정 적용 등의 논의 중
노르웨이	일부 존재	2016년 예산 및 수정 예산에서 Action 4를 수용하여 제3자 이자비용까지 확대하는 안 및 한도를 EBIT의 40%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함
덴마크[1)]	일부 존재	-
핀란드	기존재	-
독일	일부 존재	-
그리스	일부 존재	-
일본	일부 존재	-
사우디아라비아	일부 존재	-

주: 1) (덴마크) EBIT 규정을 고정·그룹비율규정으로, 과소자본세제 및 자산기준을 별도목적규정으로 보게 되면 Action 4에 어느 정도 부합하나, EBIT에 적용되는 비율이 Action 4의 권고 비율에 부합하지 않음.

자료: IBFD; IRS; The White House &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European Council; GOV.UK; Ernst & Young; Norton Rose Fulbright; Deloitte; 財務省; PWC 등의 자료를 재인용(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하여 저자 작성(상세 자료 출처는 위 본문의 각국에 대한 각주 참조).

16) PWC, Doing Business in the Kingdom of Saudi Arabia: A tax and legal guide, 2015, p.14.,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05 요약 및 시사점

■ **Action 4는 모범접근방법의 적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고정비율규정의 적용과 최소양적기준, 그룹비율규정, 조정금액의 이월 및 소급, 별도목적규정, 산업별 특별규정의 운영재량을 부여하고 있음**

- 개별 기업에 대해 EBITDA(EBIT도 가능)의 10~30% 내에서 고정비율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 이자비용기준 최소 양적 기준의 부여, 그룹비율규정으로 고정비율규정을 완화, 미공제 또는 잔여한도의 이월 또는 소급 가능, BEPS에 대응하는 별도목적규정 운용, 금융·보험업에 대한 특별규정을 운용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부채비율 기준의 이자공제제한 규정이 존재하나 Action 4에 부합하지 않으며, 아직까지 공개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과소자본세제는 이자공제제한 규정이기는 하나 손익기준을 근간으로 하는 Action 4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함
- 공개적인 논의는 없으나 2016년 연구용역 실시 등으로 입법 여부를 검토하고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해외에서는 EU 및 개별 국가 중 영국과 노르웨이만 입법을 위한 공개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동향이 확인되지 않음**

- EU는 조세회피방지패키지 지침에 Action 4와 부합하는 제도를 담고 있지만 이를 OECD가 최소기준분류시점과 2024년 중 빠른 날까지 유예하고 있음
- 영국이 가장 앞서 고정비율규정 적용 등을 위한 공개 의견수렴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2016 예산에서 Action 4에 따른 이자비용공제제한을 제안함
- 일부 국가들은 현재 손익기준 이자공제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Action 4에 부합하지 않으며, 관련 동향도 확인되지 않음

■ **해외 국가들이 Action 4를 조기 채택 또는 자발적 채택을 할 가능성은 Action 4의 추가검토 필요성, 국가의 경영환경 경쟁력, 해외동향을 비추어볼 때 높지 않은 것으로 예측됨**

- 이자공제제한 작업은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2016년까지 세부지침 및 금융업에 대한 추가적인 작업 이행, 2020년까지 관련 국가의 검토 및 수정될 가능성 존재, 전

환을 위한 유예기간 암시 등[17]을 보고서에서 기술하고 있음

- 이자공제제한은 단순히 소득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닌 Action 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18] 자본수입국 입장에서는 국내 경영환경의 경쟁력을 낮추는 제도이기 때문에 강화된 제도를 조기 도입하고자 하는 유인이 약할 수 있음
  - 가장 빠른 논의가 이루어지는 영국에서도 다른 국가들이 제도의 채택 여부 및 시기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음[19]
- 영국과 노르웨이를 제외하고는 현재 Action 4와 관련된 동향이 확인되지 않으며, EU 지침조차 유예조항을 두고 있어 단기간 내에 EU회원국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예측됨
  - 영국과 노르웨이도 입법이 완료된 것이 아니며 노르웨이는 예산안에서 제안만 이루어진 상황일 뿐임

그러나 Action 4가 채택되는 경우 영향의 유의성과 납세협력을 위한 복잡한 체계를 고려할 때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이자 등의 제한은 모든 기업들의 투자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이 클 수 있음
  - 특히, 부채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산업 또는 기업에 대해서는 MM의 수정이론에 의한 부채조달에 따른 기업가치에 직접적이고도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Action 4는 다수의 권고사항과 다수의 재량을 두고 있어 각국별로 다른 체계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완화하는 규정인 그룹비율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개별기업과 그룹전체를 고려한 조세전략이 필요함
  - 국가마다 다른 비율의 적용, 회계기준 또는 세무기준 등 이자비용 등의 수치 산정에서의 다른 방법 적용, 그룹비율 규정에서 그룹의 다른 정의, 다양한 별도목적규정, 다른 산업별 예외규정 등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투자하였거나 투자하고자 하는 국가마다의 동향을 각 규정 및 예외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현재 그룹 및 개별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따라 국가별로 다른 조세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이러한 행위는 납세협력비용의 일종이지만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납세협력비용보다는 낮을 것임

17) OECD, op, cit., p.79.
18) 위의 도입배경 참조.
19) GOV.UK(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tax-deductibility-of-corporate-interest-expense/tax-deductibility-of-corporate-interest-expense-consultation).

참 • 고 • 문 • 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BEPS 프로젝트 조치별 대응 방향(Ⅱ) 기업과세의 일관성 확보」, 2015.11.20.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Deloitte, *Taxation and Investment in Denmark,* 2015.

Ernst & Young, "Norwegian Government issues revised Fiscal Budget for 2016 and proposal for implementation of CbC reporting," Global Tax Alert, 13 May 2016.

IRS, "LB&I International Practice Service: Process Unit– Audit," 2016.1.16.

OECD, *Limiting Base Erosion Involving Interest Deductions and Other Financial Payments, Action 4 –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OECD Publishing, Paris., 2015.

PWC, *Doing Business in the Kingdom of Saudi Arabia: A tax and legal guide*, 2015.

The White House &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The President's Framework for Business Tax Reform: An update," April 2016.

財務省, 説明資料 [「BEPSプロジェクト」を踏まえた国際課税の課題] , 平成28年５月26日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IBFD(www.ibfd.org)

European Council, Council of European Union(http://www.consilium.europa.eu).

Norton Rose Fulbright(http://www.nortonrosefulbright.com).

GOV.UK (https://www.gov.uk).

이자비용공제제한 관련 BEPS 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